

환경부 공고 제2011-159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1년 4월 18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(2.5)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,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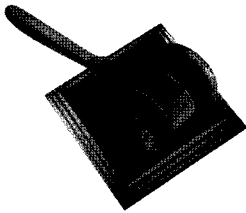
2. 주요내용

- 가.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(안 제62조 및 별표 17의2).
- 나.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(GDI) 사용 자동차의 PM(2.5)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(NH₃)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(안 별표 17 제1호사목).
- 다. 경유자동차,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(안 별표 17 제2호 및 제4호).
- 라.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(별표 18).
- 마.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(별표 20).

환경부 공고 제2011-145호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2011년 4월 11일 / 환경부장관

**1. 개정이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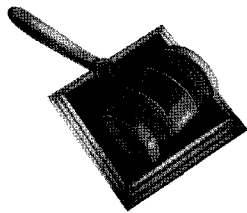
2009. 1. 1. 제도 도입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·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·시행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·범위등의 결정절차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(안 부칙 제2조)
- (1)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평가항목과 범위를 정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평가서 작성·

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유용성이 인정되었고,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는 동일한 평가 절차가 지속 시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·범위등의 결정절차가 폐지될 경우 형평성 문제 및 제도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.

- (2) 부칙 제2조(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·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를 삭제함.
- (3) 사업내용 및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항목·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, 사업 초기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여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기대됨.



환경부령 제405호
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2011년 3월 31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부장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공원시설 사용료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,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.

- (1) 제24조제1항 본문 중 "환경부장관"을 "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(2)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, 공단, 시·도지사가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(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)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(3)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 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